

#

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8 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5 영업일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--	---	---